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0. 19.(목) 14:00 배포 2023. 10. 19.(목) 10:00

조세심판원, ’23년 3/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심판결정 3건을 선정
  - [조심 2023인7536] 청구인의 출판(제조업) 사업장은 ‘공장’ 관련 요건을 충족하므로 중소기업 지방이전 관련 세액감면 대상임
  - [조심 2023서616]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이후 실제 등록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임
  - [조심 2022지1848]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련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매도약정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 **조세심판원**(원장 : 황정훈)은 **’23년 3/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하였다.

○ 이번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23년 3/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3인7536, 2023.9.26.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공장**'에 대하여 **제조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청구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주소지(서울 및 고양시 소재 아파트)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서적 출판업)을 영위**하다가 2018년 **권역 밖**인 파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 그에 따라 2022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심판부**는, **파주출판문화단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2009년 **출판업 사업장**의 '공장' 여부 기준설정을 위해 관련 **사업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1990년 이후** 많은 인력, 공간 및 장비가 요구되는 **인쇄출판이 사라지고, 사무실(사업장) 내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갖추고 **출판의 주요공정에 해당하는 기획, 원고입수, 조판, 교정 등을 수행**한 후 **인쇄, 제본 등 제조활동의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 처리**하는 **전자출판이 급속히 발전**하였는데, 이러한 **전자출판**의 경우에도 **해당 사무실이 '공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세액감면 대상**으로 삼아 왔던 점, **현재의 출판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공장의 물리적 실체를 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이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② 조심 2023서616, 2023.8.21. (인용)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는 **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되는 주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되는 임대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는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후단**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해당연도 9월 30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의 종료일**인 2021.9.30. 관할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고(이후 최종 **등록**은 2021.11.11. 이루어졌다), 2021.12.7.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다.

○ **처분청**은 **합산배제 신고기한(2021.9.30.)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신고를 거부**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임대주택(다세대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 **심판부**는, 청구인이 **2021.9.30.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임대사업자 등록** 업무는 별도 심사 등의 절차 없이 **신청 당일에도 처리될 수** 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는 42일의 장기간이 소요된 점(신청 당시 처리 예정기한은 2021.10.8.이었다), 처분청 의견처럼 **실제 등록일만을 고수**할 경우 **관할 구청의 민원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가 달라져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합산배제 신고를 거부하고,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③ 조심 2022지1848, 2023.8.24. (인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등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청구인은 2022.4.8.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건축허가 전 주택의 매도신청을 하였고, 2022.5.20. 해당 주택이 소재할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2.7.21.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처분청은, (약정 체결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을 매도 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의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심판부는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민간신축 임대약정 사업의 일반적 진행절차를 보면 먼저 사업부지 등을 취득한 후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이 민간신축 임대약정 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이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약정을 위한 매도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미착공 시 추징하도록 같은 조

제3항의 보완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 매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상기와 같은 '23년 3/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그 전문(全文)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심판결정례 - 주요 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외의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전문)도 위 **홈페이지**("심판결정례 - 통합검색")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다.

※ (붙임) '23년 3/4분기 주요 결정 요약

담당 부서	조세심판원 행정실	책임자	행정실장	곽상민 (044-200-1720)
		담당자	사무관	주강석 (044-200-173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23년 3/4분기 주요 결정 요약**

▣ 조심 2023인7536, 2023.9.26.

(**제　　목**) 조특법 제63조의 중소기업 지방이전 관련 세액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액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실관계**) 청구인은 교과서 등의 서적 출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주소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가 성장관리권역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여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하였다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주소지 사업장이 조특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심판결정**) 처분청이 2022.10.25. 청구인에게 한 2018년부터 2021년 귀속까지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단이유**) 종전의 인쇄출판에서 전자출판으로 급속히 발전하여 1990년 이후에는 많은 인력과 공간 및 사진식자기, 도판, 활자 등의 장비를 요구하는 인쇄출판이 사라지고, 숙련된 소수의 인원과 좁은 공간에서도 컴퓨터 및 주변기기와 조판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인쇄·출판작업 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화됨에 따라 제조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는 공정(인쇄, 제본)을 외주가공처리하고 있거나, 사무실 내에 내부공정에 필요한 컴퓨터와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장비를 갖추고 출판의 주요공정에 해당하는 기획, 원고입수, 조판, 교정 등을 수행한 후 투입비용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는 필름작업, 인쇄, 제본 등의 작업을 외주가공처리하고 있더라도 중소기업 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판업에 있어서 '공장'의 판단기준을 설정하여 세액감면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5.7.7.부터 2018.1.22.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서적출판·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점, 현재의 출판업의 특성상 사업장의 물리적 실체를 보다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공장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자세한 내용은 결정서 전문(클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심 2023서616, 2023.8.21.

(**제　　목**) 종부세령 §3①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요건(21.9.30.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판정함에 있어 그 등록신청 후 실제 등록일이 장기간 소요된 사정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주장 당부

(**사실관계**) 청구인은 21.9.30.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2.11.15. 임대사업자등록증(등록일 : 21.11.11.)을 교부받은 후 합산배제를 신고함

(**처분개요**) 청구인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다세대주택에 대한 단기임재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9.22. 관련 법령(민간임대주택법 §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었다가, 21.9.30.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1.11.15. 임대사업자등록증(등록일 : 21.11.11.)을 교부받은 후, 청구인은 21.12.7. 위 주택의 합산배제를 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조항에 따른 기한(합산배제 신고기한인 21.9.30.) 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합산배제 신고를 거부하고 21.12.15. 위 주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부세 등을 부과함

(**심판결정**) 2021년 귀속 종부세 등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판단이유**) 청구인은 합산배제 신고기한의 종료일(21.9.30.)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임대사업자 등록업무는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복합민원이 아니라 특별한 심사 등의 절차 없이 신청 당일에도 처리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임대주택의 합산배제가 적용된다면 위 종료일 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음에도 위 종료일까지 해당 등록이 미완료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위 합산배제를 제외해야 할 것인바, 이는 관할 지자체의 민원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합산배제 여부가 결정되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미완료되었다 하여 청구인에게 종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임

※ 자세한 내용은 결정서 전문(클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심 2022지1848, 2023.8.24.

(**제　　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5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 청구인은 2022.4.8. ○○공사에 매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2.5.20. **시 소재 토지와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2.7.**. ○○공사와 매도약정을 체결하였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이하 "쟁점규정")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처분개요**) 청구인은 2022.5.20.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공사와 매도약정을 체결(2022.7.**)하고 쟁점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쟁점규정은 매도약정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거부하였음.

(**심판결정**)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단이유**) 쟁점규정의 신설취지는 "신축 매입 주택 등의 약정을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서민주거생활 안정지원 등"에 있고, ○○공사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민간신축 임대약정 사업의 정의를 보면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자인 ○○공사의 민간 신축임대 약정 사업의 일반적 진행절차를 보면 먼저 사업부지 등을 취득한 후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서에서 민간신축 임대약정 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이미 ○○공사에 임대약정을 위한 매도신청을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규정에 대한 추징규정에서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미착공을 할 경우 추징하도록 보완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 자세한 내용은 결정서 전문(클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